대전직할시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"감사"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"조사"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감사) ①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.
 -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이내로 실시하되, 상임 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(이하"감사위원회"라 한다)가 운영위원 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 여 행한다.
 -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, 감사위원회의 편성, 감사요령,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 하거나 반려한다.
 - ⑤의회의장(이하"의장"이라 한다)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3조(조사)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

행할 수 있다.

-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,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 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(이하"조사위원회"라 한다)를 확정한다.
-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.
-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, 조사할 사안의 범위, 조사방법,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.
-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 하거나 발려한다.
-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4조(사무보조자)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.
- 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본청
 - 2. 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원, 소방서, 농촌지도소등 직속기관과 사업소.
 - 3.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직할시 교육청, 대전직할시 동부

교육청, 대전직할시 서부교육청, 사업소, 소속 및 산하기관. 다만,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.

- 4.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법과 법제 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.
- 5.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도는 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한다.
- 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.
 - ② 삭 제(호)
- 제7조(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)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- 제8조(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)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.
- 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

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,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 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,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,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 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)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 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·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.
- 제11조(공개의 원칙)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. 다만,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12조(제척과 회피)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.
 -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 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.
 -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 -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

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.

- 제13조(주의의무)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 -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14조(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)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- ③의장은 의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- 제15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.
 -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 에서 적법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관에 이송한다.
 - ③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

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,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대전직할시의회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제17조(준용규정)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와 대전 직할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 1 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규정) 제6조의 규정은 1991. 1. 1 부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수 있다.